

집행소위원회 위임 사항

2015년 7월 24일 개정

당 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협약 제3, 4, 5, 6 및 9조에 기술되어 있다. 다른 사항도 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다.

당 소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:

- (1) 집행 또는 검색 노력, 전략 및 계획;
- (2) 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포획한 소하성어류의 거래 및 불법거래와 그러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취한 조치;
- (3) 협약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조업선의 시도와 그러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국과 항만국이 취한 조치;
- (4) 협약수역에서 당사자 및 비당사자의 조업선이 수행한 협약 제 3조에 규정된 무허가 조업 활동;
- (5) 협약의 조항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기국의 집행조치와 항만국의 검색조치;
- (6) 협약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칙을 포함한 국내 조치 및 처분;
- (7) 협약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이 수행한 무허가 조업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방지, 억제, 기소 및 근절하기 위해 계약당사자가 취한 조치;
- (8) 적절한 기타 사항.

또한, 집행 업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:

- (9)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가 협약수역에서의 과학 연구를 위한 “항해 일정”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일정을 수락;
- (10) 계약당사자가 지정한 집행 연락관 사이의 연락을 통해서 협약수역에서 작업 중인 조사선의 현재 시간과 해당 위치를 계약당사자에게 제공;
- (11) 무허가 조업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, 필요한 경우, 거래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개발 방안 또는 원산지 증명 계획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;
- (12)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 위원회를 설치;
- (13) 협약에 반하는 조업활동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의 구축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;

- (14) 이 협약을 위반한 조업의 결과로서 모천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고려;
- (15)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 성실한 집행 및 검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추가로 취할 조치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;
- (16) 이 협약에 준수하는 어획을 허용하는 법률 및 규정들을 채택하고 소하성어족자원과 생태학적 관련 종의 보존과 관련된 집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나 실체를 장려하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;
- (17) 협약수역에서 소하성어류의 부수적인 포획을 피하거나 줄이는 것에 관해 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;
- (18) 계절에 따른 순찰 및 집행노력들을 조정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위협을 받았던 기간에 비추어 미리 여유 있게 연례공동순찰계획 회의를 개최;
- (19) 강화된 집행기간 동안 모든 당사자들이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될 집행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, 모범적인 조치는 공유하며, 집행조치를 평가하고,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의사소통;
- (20) 불법 어업, 관련된 어획 활동 및 조업선의 추세와 행동을 검토하고 집행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신의 집행조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 심포지엄을 개최;
- (21) 적절한 기타 의무.